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6/ 3/ 18 통권 177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025 사업연도 귀속 법인결산 회계해설과 법인세 신고서·세무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최종점검표(Checklist)」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컨설팅

- 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동점검사항
 - 일반 절차 및 세무신고 관련서류 범위
 - 세무계산상 손금인정받기 위해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결산조정)해야 하는 사항
 - 2025년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2023년과
달라진 핵심요약
- 2026. 3월의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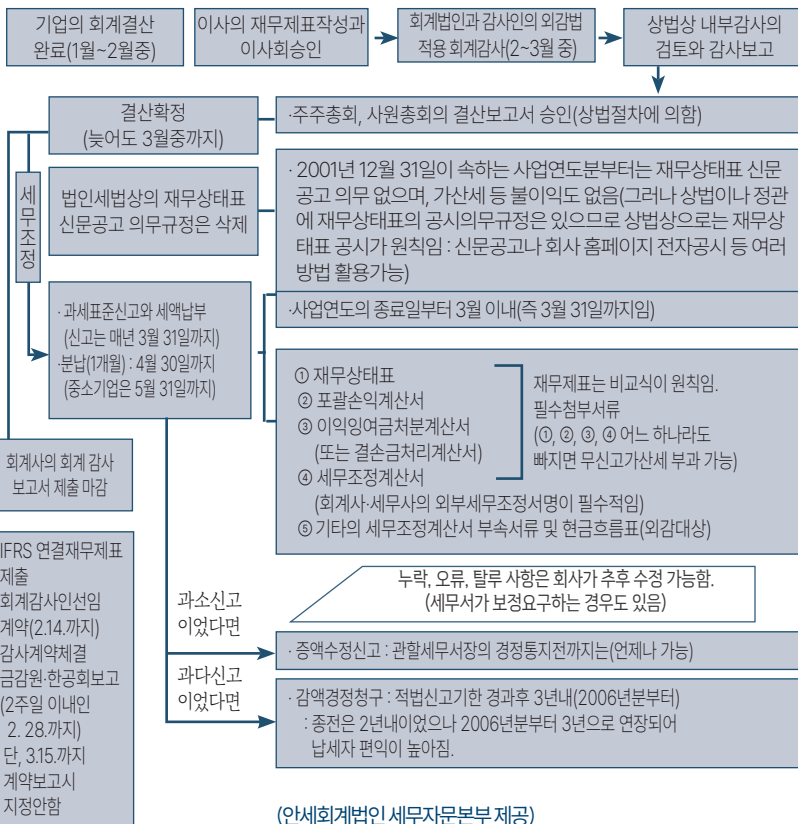
✓ 조세전문가의 세무컨설팅

- 202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사례 해설
 -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및 가산세관련
보완서류(법인세법 제116조)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사업연도 2025. 1. 1~12. 31)
 - 가산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에의 익금
조정 개요
 - 조정사례와 구체적 서식작성실무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
 - 2025년 12월말 세무결산환율표

재경팀 업무지침

- ①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세와 각종 재무보고서류의 작성
·세무조정신고·납부절차 관계도 개요
- ② 2025년 사업연도 법인결산에서 당장의 법인세절세와 나중에 과세
이연하기 위한 각종 점검내용 요약

Flowchart of Accounting report and corporation tax return(see page 1)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영·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71호 / 주간 11호

2026. 3. 18.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202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안내(국세청 자료)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 급 시 사 해 설	세액공제·감면 및 준비금 등 각종 법인세 절세혜택항목 점검표	2
세 무 컨 설 톡 I	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8
세 무 컨 설 톡 II	202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례 해설	24
	1.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및 가산세관련 보완서류	25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27
	3.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자의 익금조정 개요	29
	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0
	5. 퇴직연금 부담금 등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32
	6.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3
	7.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6
	8.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38
	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39
	10.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9
	11.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	41
	12.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	45
	13.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46
	14.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48
	1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사례	51
	16. 조정항목별 소득처분방법과 구체적 사례	53
	17.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55
	18. 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	56
	1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56
	20. 2025. 12. 31일자 법인결산과 세무신고를 위한 국세청 고시 회계세무환율(재정환율)	60
	2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61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 서울외국환중개(주)	64



세액공제·감면 및 준비금 등 각종 법인세 절세혜택항목 점검표

1. 법인세 면제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 : 매년 세액 면제·감면·공제신청서 제출 필수

구 분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감면의 방법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6)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18.5.29. 이후 수도권 내 창업한 생계형, 청년창업기업 포함),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기본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 '18.5.29. 이후 '25.12.31. 이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기업 : 5년간 100% ▶ '18.5.28. 이전 청년창업 중소기업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 50% ▶ '18.1.1. 이후 '24.12.31.까지 창업·확인·해당하는 대상 기업 중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기업 :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 50% ▶ '18.5.29. 이후 창업한 연간수입금액 80백만원('22.1.1. 이전 48백만원 이하): 수도권 외 100%, 수도권 내 50% - (추가감면)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1/2(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충족) - (감면한도) 5억원 ('25.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 §7) * 2005. 1. 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	-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table><tr><th>구분</th><th>소재지</th><th>업종</th><th>감면율</th></tr><tr><td rowspan="8">소기업 중기업</td><td rowspan="3">수도권</td><td>제조업 등</td><td>20</td></tr><tr><td>도소매,의료업</td><td>10</td></tr><tr><td>통관대리 등</td><td>10</td></tr><tr><td rowspan="3">수도권 외</td><td>제조업 등</td><td>30</td></tr><tr><td>도소매,의료업</td><td>10</td></tr><tr><td>통관대리 등</td><td>15</td></tr><tr><td rowspan="3">수도권</td><td>출판업</td><td>10</td></tr><tr><td rowspan="2">수도권 외</td><td>제조업 등</td><td>15</td></tr><tr><td>도소매,의료업</td><td>5</td></tr><tr><td colspan="2"></td><td>통관대리 등</td><td>7.5</td></tr></table> * (한도) 기본한도 1억원-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1인당 × 5백만원	구분	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제조업 등	20	도소매,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소매,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5	수도권	출판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도소매,의료업	5			통관대리 등	7.5
구분	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제조업 등	20																														
		도소매,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소매,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5																														
	수도권	출판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도소매,의료업			5																														
		통관대리 등	7.5																														
③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 §12①,③)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 -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5%																															
④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 소득 발생 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⑤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20)	-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	-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감면
⑥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면제 (조특법 §21)	-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등 -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00% 면제
⑦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62)	-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 도시 또는 세종시로 이전 하기 위하여 종전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 성장관리권역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간 균등액 이상을 환입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2년은 100%, 그 다음 2년은 50% 감면 *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이전 본사근무인원 비율
⑧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이전하는 기업에 대한세액감면 등 (조특법§6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함에 따른 이전 후 공장소득 * 본사가 함께 있는 경우 같이 이전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후 6년(4년)은 100%, 그 다음 3년(2년)은 50% 감면
⑨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조특법§63의2)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본사 이전에 따른 소득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후 6년(4년)은 100%, 그 다음3년(2년)은 50% 감면
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64)	-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나주일반, 혁신·김제지평선·장흥바이오 식품·북평국가, 일반·강진·정읍 첨단과학·동함평·세풍일반(1단계)·담양일반·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 기업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4년간 → 법인세50% 감면
⑪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66)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 2014.1.1. 개정시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을 과세로 전환(2015.1.1.이후 개시 하는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1,200만원 × 조합원수 ×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한도)
⑫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67)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 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	- 어로어업소득(3,000만원× 조합원수 ×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한도) - 어로어업소득외의 소득 중(1,200만원×조합원수 ×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한도)



⑬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68)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 법인 * 2014.1.1. 개정시 수입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을 과세로 전환 ('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 : 50억원 한도 - 부대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85의6)	- 사회적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2년은 100%, 그 다음 2년은 50% 감면 * 최저한세 적용 제외
⑮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96)	- 내국인이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1호 임대 : 30% 감면(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75%) - 2호 이상 임대 : 20% 감면(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50%)
⑯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99의9)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하는 기업으로 지정기간 내 창업기업	- 5년간 100% 감면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 중견·대기업은 다음 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 수×1,500만원(청년 등 2,000만원)
⑰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04의24)	- 내국법인이 국외(개성공업지구 포함)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밖)로 이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고 국외 사업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요건 충족	① 완전복귀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개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② 부분복귀 -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⑱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⑲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9)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해당 구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에 대한 감면 - ㉠의 1/2를 각각 감면
⑳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업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에 대한 감면 - ㉢의 1/2를 각각 감면
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조의2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㉔ 금융중심지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21)	-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여 해당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010. 5. 14.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22)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식품산업 등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 : 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 50% 감면
㉔ 외국법인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의 법인세 감면 (조특법 §141의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 * 2019.1.1. 이후 지역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입주하는 법인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 감면
(대상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투자누계액 50% + 상시 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근로자 2,000만원)
 - 100% 감면기간(최저한세 적용 제외), 그 외 감면기간(최저한세 적용)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어느 법인이나 쉽게 적용가능한 것 발췌함)

구 분	관련규정	공 제 금 내 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30%[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25%+α)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원천기술연구개발× 최대 40%[30%+(매출액 대비 신성장 R&D비중×3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최대 40% [30%+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비중 × 3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최대 50% [40%+(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 × 25% ② 당해연도 R&D비용 × [기본 0% + (매출액 대비 R&D 비중 × 1/2배*)] * 최대 2% ※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1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 2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 40% ② 당해연도 R&D비용×8%	위 해당·선택 않은 경우 ①·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발생액 초과금액 × 50% ② 당해연도R&D비용×25%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 중소기업 졸업이후(유예기간 포함) 3년간 20%, 그 이후 2년간 15% ☞ 중견기업(조특영 §9④)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7의4	-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지급기한 15일내 지급금액 × 0.5% - 지급기한 16일~30일내 지급금액 × 0.3% - 지급기한 31일~60일내 지급금액 × 0.15% * 세액공제한도 : 법인세의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세액공제	조특법 §8의3	- 출연금액×10% -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2의3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2의4	주식 등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특법§19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5%																													
통합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공제대상) ①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등 제외), ② 일부 유형자산(①제외)과 무형자산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 본 (%)</th><th rowspan="2">추가 (%)</th></tr><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tr><td>일 반</td><td>1</td><td>5(7)</td><td>10(12)</td><td rowspan="4">10</td></tr><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6(8)</td><td>12(14)</td></tr><tr><td>국가전략기술</td><td>15</td><td>15</td><td>25</td></tr><tr><td>반도체 기술*</td><td>20</td><td>20</td><td>30</td></tr></table>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 5% p 상향('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25.1.1.이후 최초 과세표준을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세율)	구 분	기 본 (%)			추가 (%)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7)	10(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8)	12(14)	국가전략기술	15	15	25	반도체 기술*	20	20	30				
구 분	기 본 (%)			추가 (%)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7)	10(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8)	12(14)																												
국가전략기술	15	15	25																												
반도체 기술*	20	20	3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조특법 §25의6	- 기본공제(5/10/15%)+추가공제(10/10/15%) * '24.1.1.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23.12.31.이전 발생분은 기본공제율 3/7/10%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조특법 §29의8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table><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 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th><th rowspan="2">중견 (3년)</th><th rowspan="2">대기업 (2년)</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r><td>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table> * 청년 범위: 15~34세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중소</th><th>중견</th></tr><tr><td>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td><td>1,300</td><td>900</td></tr></table>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4	-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20% (중견기업 10%) * '25.12.31.이전 발생분은 기본공제율 3/7/10% 적용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 × 20%(중견기업 10%)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받은 상당액 추가납부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적용 ** '25.12.31.까지 적용 가능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0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
전자신고세액공제	조특법 §104의8	- 직접 신고 : 2만원(납부할 세액 한도) - 세무대리인 대행 : 세무대리인 본인의 소득·법인세 신고 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법인세를 신고 대행한 경우 납세자 1인당 2만원(부가가치세 신고대리에 따른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300만원 한도, 세무·회계법인은 750만원 한도)
기업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22	- 취약종목의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해 창단 후 3년간 10% 세액공제 -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비용에 대한 창단 후 5년간 20% 세액공제 - 이스포츠경기부 창단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운영비용 10%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25	- 수요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0.3% 세액공제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10% 한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30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 × 1% +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 3%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10% 한도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22의4	-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하나의 비율을 선택하여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전년 초과금액의 50% 또는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26의6	성실신고 확인 지급수수료 비용 × 60%(150만원 한도)

☞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 (조특법 §127 참조)



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국세청 발간 [2026년 법인세 신고안내] 서적에서 핵심사항 일부를 발췌하고 일부는 안전조세정보의 발간물(저널·총서·법전)과 혼합 저술함. 법인세 신고안내(국세청 발간)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문(총분량 약 700쪽이며 전부분 클릭하여 참조, 출력 가능) 그대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부

1. 2025년 12월말 법인결산과 세무신고관련 변경·개정·핵심 검토 checklist

1. 일반 절차 및 세무신고 관련서류 범위[미제출시 가산세(해당액의 1% 등) 있음]

- ① 신고납부제출마감일 : 2026년 3월 31일 월요일(회사자기조정이나 ⊕ 회계사·세무사외부조정 모두)
- ②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및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③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액면가 3억 미만이라도, 보유주 시가합계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라면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
- ④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 가산세는 40%세율로 중과세 적용하며(일반과 소가산세는 20%), 미납부관련 가산세 하루 10만분의 25(연 9.13%)적용
-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미신고 간주(법인세법 §60, 동시행령 §97⑦)
- ⑤ 주권상장·코스닥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변동상황만 주식양도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함.

2. 202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가.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

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6) 보유 중인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도록 하게 한 경우

- 법인이 취득·임차한 주택을 특수관계인(비출자임원 및 소액주주임원, 직원은 제외)과 그 친족 등에게 무상 또는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
- 업무목적과 관련 없이 주택을 보유하여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8) 보유 중인 고가의 회원권, 레저용 선박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의 손금 계상 여부

- 법인이 보유 중인 고가의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또는 레저용 선박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1)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미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자법인)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보유하고 최다출자자인 법인으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을 적용

(2) 중복지원 배제대상 공제·감면 중복 적용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
- (동일 사업장 세액감면 중복적용) 동일 사업장에 중복지원이 안되는 세액감면을 적용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공제·감면 적용) 당기순이익에 9%(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적용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감면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과다 적용

* 조특법 § 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통칙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 5. 29.이후 생계형창업, 청년 창업, 벤처기업 등인 경우 제외)
- (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 (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감면기간 초과 적용) 최초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6년차(5년을 경과)에 감면을 신청하거나, 과거 6년 전에 이미 감면을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감면기간을 초과하여 적용
- (청년창업감면법인 중 대표자 변경) 감면 신청법인 중 창업 이후 당초 청년이었던 대표자를 다른 대표자로 변경한 후 감면을 계속 적용
- (감면 미해당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감면 신청법인 중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등에도 감면을 계속 적용

(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취소된 법인의 세액공제) 휴·폐업 등*으로 연구소 및 연구 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인정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
* 자진 인정취소 요청, 기업 폐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폐쇄, 변경신고 미이행(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구 활동 없는 것으로 과기부 장관 인정, 타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제한되어 인정취소된 경우
- (지분10%초과·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법인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한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겸직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나 행정사무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연구소 인정이 직권 취소) 연구소 요건미비 등*으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인정이 직권취소

되었으나,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전담부서 등이 인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인정취소된 경우

- (증가분 방식 적용 오류) 직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당기분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증가분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 (사업운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을 공제)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사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을 세액공제 적용

(6)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적용 오류

- (고용유지 조건 미충족)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당기발생액이 있는 법인 중 직전 대비 당해사업연도 고용이 감소하였음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7) 본사 등 지방이전 감면 적용 오류

- (본사가 수도권인 기업 감면 착오 적용)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중 본사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함에도 감면을 적용

(8) 농업회사법인 감면 적용 오류

- (감면기간 초과 적용)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감면을 받은 법인 중 과거 5년 전에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으로 감면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감면기간(5년)을 초과하여 적용
- (감면율 착오 적용) 감면율 50%(최저한세 적용) 적용대상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 감면율 100%(최저한세 적용 제외)를 적용
- (보조금을 감면소득에 포함) 보조금 수취 법인으로 감면소득에서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고 감면 적용
-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감면소득에 포함)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한 법인으로 감면소득에 유형자산처분이익 포함하여 감면 적용

(9)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법인의 세액감면 오류

-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법인 배제) 영농·영어·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었으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 요건을 규정하여 미등록 법인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인
-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하여 공제과다금액 부인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 '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전 발생한 한도 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 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

라. 특수관계인 거래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율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하거나 관련 인정이자·지급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합계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마. 손익 귀속시기

(1)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 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세무조정

* 법법 § 22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2)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바. 부동산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임
 - 유·무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 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유·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이 직접 사용한 경우(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 :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

$$\frac{\text{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text{해당 자산을 보유한 일수}} \times \frac{\text{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일수}}{\text{해당 자산을 보유한 일수}}$$

* '25. 2. 28. 이후 유·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 12. 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3)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법령에 열거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 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후 기타처분

(2)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 법인의 해산, 감자, 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특히, 기업인수 등을 위한 주식취득 후 주식발행 법인의 불균등 감자시 의제 배당 여부를 검토하여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3)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세무상 조정소득금액(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대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순이자비용(이자지급총액과 이자수취총액의 차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 처분
-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상품(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거래 시 비용공제된 지급이자(이자)가 적정기간내 국외특수관계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손금 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 처분

(4)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 특허권·상표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수입수수료 등(전용실시권료, 통상실시권료) 또는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계상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5)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 수입금액 계상을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될 수 있음
* **법법 § 15 【익금의 범위】**, **법법 § 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7)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식보상비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부여한 경우, 10% 초과분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된 경우 행사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소득처분 대상임
* **법령 § 19【손비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16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아.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하여 익금산입

-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인전문병원운영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국고보조금 등을 수취

한 경우 수익사업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등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50% 적용,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총급여액 중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음
- '16년부터는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④)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금액(①), 배당소득금액(②), 복지사업 관련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③)에서 ④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 $[(①+②+③)-④]$ 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여야 함.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17년부터 적용

(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며,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조세 혜택은 배제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반드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기업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자. 기타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5백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불성실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수의 차량을 통합하여 작성하지 않고 각각의 차량별로 차종, 취득가액, 관련비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

(3)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4)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

(5)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출한 법인

- '18. 2. 21.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임

(6) 주주인 임원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련 비용을 지출한 법인

-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7)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에 대상 법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대상임

3. 2025 주요 개정 내용

가. 법인세법(각 구간별 1% 인상은 26년부터 적용)

(1) 조세제도 합리화

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법법§55)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 19%로 조정
 - (요건: ❶+❷+❸) ❶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❷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4%		

* '2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각 구간별 세율 1%p 상향

② 연결법인 중소기업 성장다리 강화(법법§76의22)

-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중전 3년) 이내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 적용

* '25. 1. 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법령§120의22)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규정 정비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에 종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외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액 가산 명확화

종 전	개 정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 ❶+❷ ❶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❷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 ❶+❷+❸ ❶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❷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법인세액

(2) 익금 및 손금 관련

① 손금불산입 대상 부담금 범위 명확화(법법§21)

● 손금불산입 대상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범위를 명확화

② 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익 과세소득 제외(법령§3)

●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 대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처분수입 과세제외

$$\frac{\text{해당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times} \frac{\text{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일수}}{\text{해당 자산을 보유한 일수}}$$

* '25. 2. 28. 이후 유·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법령§56)

●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제한 규정 합리화

- 아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의 인건비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인건비로 보지 아니함((추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 '25. 2. 2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기타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법법§120의4, 법령§163의3))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여 제출의무 대상 보완
-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 '25. 1. 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②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법법§112의2, 법령§155의2))

●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함

* '25. 1. 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나.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제도 합리화

① 중소기업 범위 명확화(조특령§2)

● 법인, 개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특법상 중소기업 제외업종 등 추가

- (기존) 소비성서비스업
- (추가) 부동산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25. 2. 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②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조특법§63)

●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 징주여건 등이 여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불리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5년 100%, 이후 2년 50%) 유지

* '25. 1. 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③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24)

● 투자지원제도 합리화를 위해 다른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의 자산(임대사업자의 임대 포함)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6)

●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 12. 31.)하고,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고용증가율의 50% → 100%)

- 다만, 특정 기업에 감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도설정(연간 5억원)

* '25. 1.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용·투자 활성화

①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의8)

●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기존 여성에서 남성까지 포함
- (업종) 1년 이상 근무(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 (퇴직사유)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추가

● 우대대상 추가

-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추가

* '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분부터 적용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24)

- 매출액 또는 자산 증가로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유예기간 종료)한 경우 3년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율 적용

증 전					개 정						
☐ 통합투자세액공제 ☐ ○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 ○ (공제율)					☐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 ○ (좌 동) ☐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 ¹⁾	구 분(%)		기본		추가 ¹⁾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일 반		1	5, 7.5 ²⁾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신성장·원천기술		3	6, 9 ³⁾	12	
국가전략기술		15		25		국가전략기술		15	15, 20 ⁴⁾	25	
1)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좌 동) 2) (-3년)7.5%, (4년-)5% 3) (-3년)9%, (4년-)6% 4) (-3년)20%, (4년-)15%											

* '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③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24)

-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직전3년 투자액)공제율을 기업규모나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10%로 상향 적용

* '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24)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 적용

* '2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⑤ 바이오의약품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명확화(조특령 별표7)

- 세제지원의 대상 명확화를 위해 투자대상 자산 열거
 - (바이오의약품 분야 적용대상)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간 기계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바이오의약품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증기제조기 등)

⑥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 미래 유망사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 →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

* '2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⑦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의2)

-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구분	분야	기술
신규	이차전지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디스플레이(2개)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수소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 시설
확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 → HBM 등 추가

* '2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⑧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조특령§116의36)

-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 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생산·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추가

* '25. 2. 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기타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하여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톤당 1운항일이익 인상하여 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선박의 확충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선박건조 확대, 해운업 경쟁력 강화 도모

다. 국제조세 분야

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조법§6)

- 경정청구 시 제출자료 추가 및 경정기한 연장
 -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정청구 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외 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설명자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종전 2개월) 이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함
 - 청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기한 산정에서 제외)

* '25. 1. 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가능 자료 확대(국조령§38)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를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 재무상태표까지 확대

* '25. 2. 28. 이후 자료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국조령§54,§55)

-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산출방법 조정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으로, 이전가격 규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아래 규정 적용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
 - 「국조령」제60의2(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관련 규정) 추가 (중전) 「국조법」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법인세법」제28조

* '2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④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54)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조정
 - (조정) 면제대상 중 국내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 182 이하인 재외국민(중전 183일 이하)
 - (추가) 조세조약에 따라 계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 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 '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⑤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국조령§144)

-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대상 추가
 -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 미제출 시 : 자료별 5천만원

* '25. 2. 28.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및 가중·감경기준 구체화

- 금융정보 미제공 시 : 2천만원
- 금융정보 거짓제공 시 : 1계좌당 30만원(한도 2천만원)
- 일부 미제공 시 : 1계좌당 10만원

* '25. 2. 28.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완화 및 가중·감경기준 구체화

<미신고·과소신고 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율 및 한도 조정
- (과태료율) 10~20%(누진율) → 10%(단일율)
- (한도) 20억원 → 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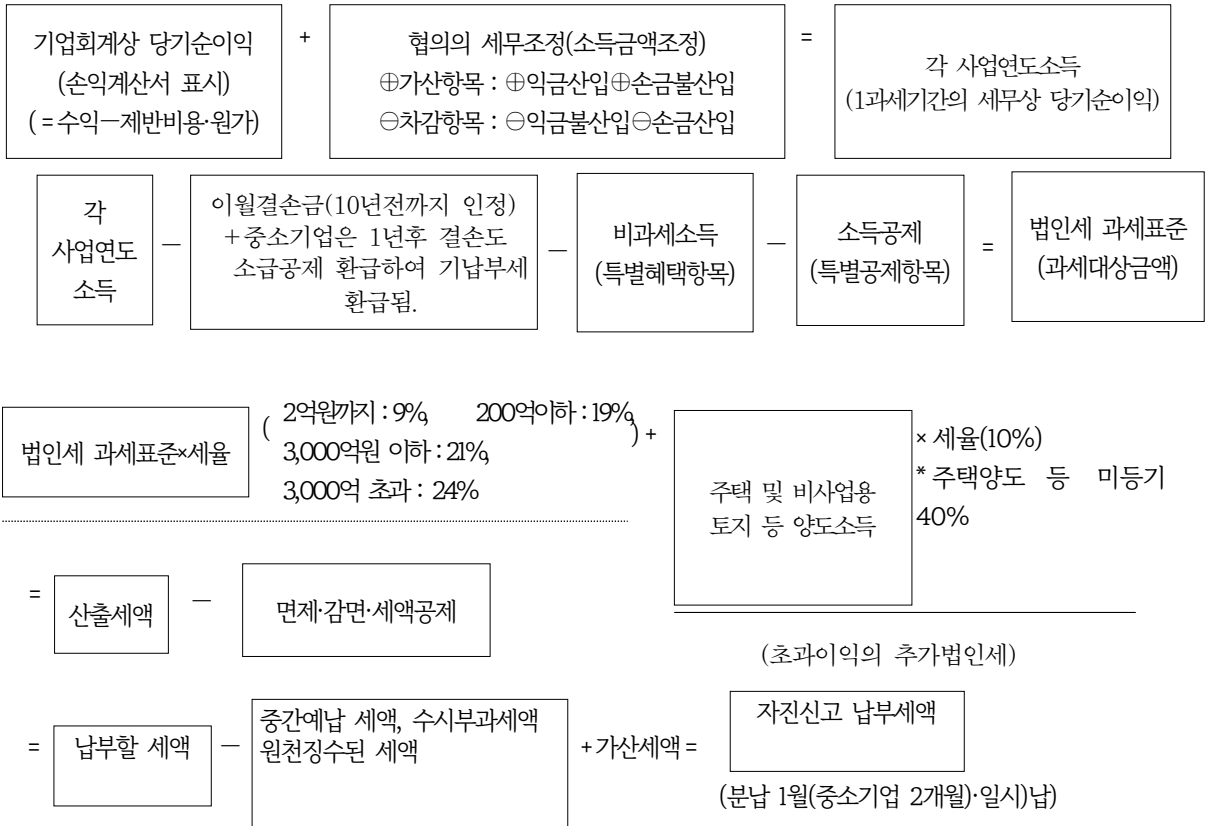
* 미신고·과소신고 합계금액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시

<미소명·거짓소명 시>

-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 10%

* '25. 2. 28.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회계결산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광의의 세무조정)



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비교

□ 결산 조정(주로 기업내부의 판단·측정으로 회계처리 재무제표 반영할 거래임)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23)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 조정 가능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29)
 -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 ③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 ④ 대손충당금(법법§34)
-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 ⑥ 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①(7)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령§19의2③2)
-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법법§42③1)
- ⑧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법법§42③2)
- ⑨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법§42③3)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 하는 주식
 -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 ⑩ 주식등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법§42③3)
-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법령§31⑦)

□ 신고 조정(주로 대외적 지출·구입·자금수지 거래임)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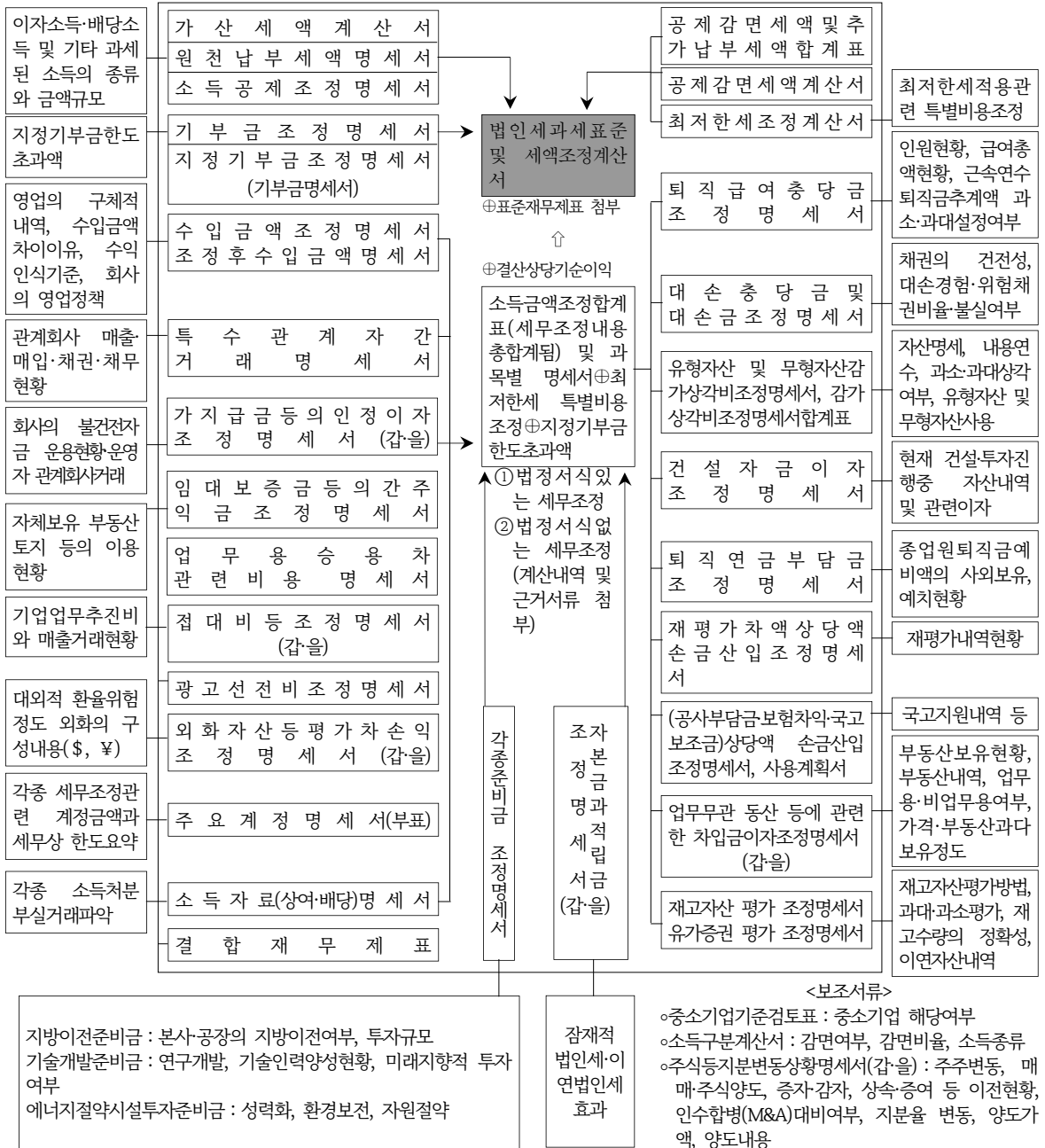
신고조정 항목

-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 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법§18·6호)
-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령§44의2)
-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령§64 ~ §66)
-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⑥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법§23)
- ⑦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법§28①(3))
-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40)
-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202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사례 해설

법인세 과세표준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흐름도와 포함된 재무정보내용



1.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가.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법 §116②, 영 §158③)

◦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기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현금영수증
3. 부가법§32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법§121 및 소득법§163에 따른 계산서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빙 인정여부》

구 분	내 용	인정여부
법 인 개 별 카 드	신용카드에 법인명칭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개인명칭이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인 정
직 불 카 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신 종 직 불 카 드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백 화 점 카 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선 불 카 드 (무 기 명)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불인정
포 인 트 카 드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영 § 158③)

◦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명서류(통칙 116-158...1)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116②의 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①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②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③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붙임]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사 업 연 도		. . . ~ . . .					
공 급 받 는 자 (신 고 법 인)		① 법 인 명 (상 호)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전 화 번 호			
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							
⑤ 일련 번호	⑥ 거래 일자	⑦ 법인명(상호)	⑨ 사업자 등록번호	⑩ 거 래 내 역	⑪ 거 래 금 액	⑫ 송 금 일 자	⑬ 은행명
		⑧ 성 명					⑭ 계좌번호
계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사업연도 2025. 1. 1~12. 31, 중소기업 아님)

□ 자 료

- ① 결산서상 수입금액 내역 : ㉠ 제품매출 : 800,000,000원 ㉡ 공사매출 : 675,000,000원
 ② 공사현장별 공사현황

공사명	공사계약 체 결 일	도급계약기간	도급금액	당해연도총공사비 (총공사예정비)	손익계산서상 수익계상반영액
A	2024. 11. 10	2025. 2. 1~2026. 5. 17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470,000,000
B	2025. 7. 20	2025. 8. 10~2026. 9. 30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205,000,000
계	-	-	1,100,000,000	620,000,000	675,000,000

- ③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인 기계를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음.
 ◦계약일 및 인도일 : 2025. 3. 31 ◦계약금액 : 18,000,000원
 ◦대금결제조건 : 2025. 3. 31 계약금 3,000,000원을 받고, 6개월 경과시마다 3,000,000원
 씩 5회에 나누어 받기로 함.
 ◦회사는 기계매각대금총액(18,000,000원) 및 장부가액(15,000,000원)전액을 당기의 수입금
 액 및 대응원가로 각각 계상하여 결산하였으며
 ◦2025. 9. 30에 회수하여야 할 부불금 3,000,000원이 아직 결제되지 아니하였음.
 ④ 제품재고액 중 Y제품 8,000,000원은 타인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적송품)으로서
 2025. 12. 31에 수탁자가 10,000,000원에 판매한 것임.
 ⑤ 2024년도 거래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2025년 1/4분기 중에 매출
 에누리 하여준 금액 5,000,000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함.

□ 세무조정 계산

① 공사수익의 계산

공사명	①도급금액	②당해사업연도말 총공사비누적액	③총공사 예정비	④진행률 (②/③)	익금산입액⑤ (①×④)	⑥회사수익 계상액	⑦조정액 (⑤-⑥)
A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76.6%	536,200,000	470,000,000	66,200,000
B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53.3%	213,200,000	205,0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공사수익 세무조정

세무상 공사수익 : 749,400,000

장부상 공사수익 : 675,000,000

익 금 산 입 : 74,400,000(유보)

② 장기할부매각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계산

- 법인이 인도기준으로 결산조정 신고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아니함.

③ 위탁판매 수입금액 조정계산

- 위탁판매액 10,000,000원은 익금산입, 원가 8,000,000원은 손금산입

④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는 매출에누리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므로 동 에누리금액을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

조정내용 정리

-수입금액에 가산할 내용

㉑ 공사매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액 : 74,400,000원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사항

㉒ 제품매출

·매출에누리 금액(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 : 5,000,000원

㉓ 제품매출

·위탁판매 수입계상 누락액 : 10,000,000원

조정내용 정리사항으로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작성이 끝나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연도	2025. 1. 1 ~ 2025. 12. 3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명	(주) 안 건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계정과목		③ 결산차상 수입금액	조정		⑥ 수정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고			
① 항목	② 과목		④ 가산	⑤ 차감					
매출	제품매출	800,000,000	10,000,000	5,000,000	805,000,000				
	공사매출	675,000,000	74,400,000		749,400,000				
계		1,475,000,000	84,400,000	5,000,000	1,554,400,000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⑦공사명	⑧도급자	⑨도급금액	작업진행률계산			⑬누적익금 산입액 (⑨×⑫)	⑭전기말 누적수입 계상액	⑮당기회사 수입계상액	⑯조정액 (⑬-⑭-⑮)
			⑩당해사업 연도말총공 사비누적액	⑪총공사 예정비	⑫진행률 (⑩/⑪)				
A	갑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76.6%	536,200,000	0	470,000,000	66,200,000
B	을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53.3%	213,200,000	0	205,0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다. 기타 수입금액									
⑰구분		⑱근거법령		⑲수입금액		⑳대응원가		비고	
위탁판매				10,000,000		8,000,000			
계				10,000,000		8,000,000			

3.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율의 익금조정 개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영§88①(6), §89③)

-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약정한 대여금에 대한 시가적용 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66호 2012. 2. 28. 개정된 것)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431, 2012. 6. 28.)
-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5, 2016.10.12.)

■ 조정에 필요한 내용

(1) 가지급금 인정이자 배제 대상

①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규칙§44, 1호)

☞ 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며,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frac{\text{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text{종합소득 총결정세액}} \times \frac{\text{미지급소득}}{\text{종합소득금액}}$$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산한 금액(법칙§44(2))

☞ 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법칙§44(3))

☞ 조합원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법칙 §44, 4호)
 ☞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법칙 §44, 5호)
 ☞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⑥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법칙 §44, 6호)
- ⑦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포함)의 대여액(법칙 §44, 7호)
- ⑧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법칙§44(7의2))
- 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법칙§44(8))

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사업연도 : 2025. 1. 1~2025. 12. 31)

① 총급여액 지급내역

계 정 과 목	총 급 여 액		퇴직급여지급 대상자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자	
판매 관리비 : 임원급여	3	180,000,000			3	180,000,000
판매 관리비 : 급여수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제 조 원 가 :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143명	2,460,000,000	32명	287,000,000	111명	2,173,000,000

② 퇴직급여충당금 내역

- ㉠ 장부상 기초잔액 : 578,000,000원
 ㉡ 충당금 부인누계액 : 38,000,000원
 ㉢ 기중 퇴직금지급액 : 104,000,000원

- ③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정관규정에 따른 추계액) : (111명) 1,798,000,000원
 ④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 (111명) 1,500,000,000원
 ⑤ 회사가 당기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 129,300,000원

□세무조정 계산

- ①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자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
 ② 총급여액의 5/100와 퇴직급여추계액의 0/100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 됨.

③ 한도초과액 129,300,000은 손금불산입

[별지 제32호 서식]

사 업 연 도	2025. 1. 1. ~ 2025. 12. 3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안건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 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⑬의 계)			②설정률	③한도액 (①×②)	비 고
	2,173,000,000			5/100	108,650,000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도액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기 중 충당금 환입액	⑦충당금 부인누계액	⑧기 중 퇴직금 지급액	⑨차감액 (④-⑤- ⑥-⑦-⑧)
	578,000,000	0	0	38,000,000	104,000,000	(△) 436,000,000
	⑩추계액 대비 설정액 (②② × 설정률)		⑪퇴직금 전환금		⑫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 MAX(⑨-⑩-⑪, 0)	⑬누적한도액 (⑩-⑨+⑪+⑫)
	0		0		436,000,000	0
한도초과액 계 산	⑭한도액 MIN(③, ⑬)		⑮회사계상액		⑯한도초과액 (⑮-⑭)	
	0		129,300,000		129,300,000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계정명	⑰총급여액		⑱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 인에 대한 급여액		⑲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에 대한 급여액		⑳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 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 직급여 추계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임원급여	3	180,000,000			3	180,000,000	111	1,798,000,000
급여수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㉑「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퇴직 연금미가입자의 경우 일시퇴직기준(㉒)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조비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인원	금 액
							111	1,500,000,000
							㉒세법상 추계액 MAX(㉒, ㉑)	
계	143	2,460,000,000	32	287,000,000	111	2,173,000,000	111	1,798,000,000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5. 퇴직연금 부담금 등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조정에 필요한 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법칙 §23 각호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 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영 §44의2②)
-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동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 그 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44의2④)

① 퇴직연금 등의 범위(법칙 §23)

- 손금산입 하는 퇴직연금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 퇴직보험·신탁 폐지에 따라 2011. 1. 1. 이후 납입하는 퇴직보험·신탁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되지 않습니다(법령 §44의2②, 2010. 12. 30. 개정).
 -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은 익금에 환입하지 아니하며, 보험료 등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2010. 12. 30. 영 부칙 §19)

②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¹⁾ 과 보험수리기준추계액 ⁽²⁾ 중 큰 금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³⁾	=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A)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A)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B)	=	손금산입 한도액(C)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 ⁽⁴⁾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B) ⁽⁵⁾	=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D)
손금산입범위액 =(C)와 (D)중 적은 금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령\$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법령\$44의2③에 따른 손금 산입액 제외)을 말합니다.
 - 다음 ㉠, ㉡의 합계액(법령\$44에 따른 손금불산입액과 법령\$44의2③에 따른 손금 산입액 제외)
 - ㉠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6조 제1항 제1호)
 - ㉡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장부상 기말잔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설정자의 설정 전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말 부인누계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연금예치금 등 합계액=기초 퇴직연금예치금 등 -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누계액 - 기중 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
- ③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영\$44④을 적용하되,
 -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영\$44의2③단서)

6.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①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퇴직급여추계액(정관 규정

에 따른 추계액) : 100,000,000원

- ②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제외) 퇴직급여추계액(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 : 50,000,000원
- ③ 퇴직급여충당금 - 전기이월액 : 20,000,000원,
당기설정액 : 10,000,000원(한도초과액 없음)
- ④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60,000,000원
- ⑤ 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70,000,000원
→ 이중 당해사업연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은 15,000,000원임.
- ⑥ 당기회사불입액 : 25,000,000원
- ⑦ 당기에 회사가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35,000,000원

□세무조정 계산

- ① 퇴직급여 추계액 : 100,000,000원[$\text{MAX}(100,000,000\text{원}, 50,000,000\text{원})$]
- ②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30,000,000원 ($20,000,000 + 10,000,000$)
- ③ 퇴직연금부담금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①-②) : 70,000,000원
- ④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 45,000,000 ($60,000,000 - 15,000,000$)
- ⑤ 손금산입 한도액(③-④) : 25,000,000
- ⑥ 기말현재 퇴직연금예치금등 : 80,000,000($70,000,000 - 15,000,000 + 25,000,000$)
- ⑦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부담금 등 : 35,000,000 (⑥-④)
- ⑧ 한도액 : 25,000,000 (⑤와 ⑦ 중 작은 금액)
- ⑨ 한도초과액 : 10,000,000($35,000,000 - 25,000,000$)

[별지 제33호 서식]

사 업 연 도	2025. 1. 1. ~ 2025. 12. 31.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안건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① 퇴직급여추계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⑥ 퇴직부담금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 (①-⑤)
	② 장부상 기말잔액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 금	④ 당기말 부인 누계액	⑤ 차감액 (②-③-④)	
100,000,000	30,000,000			30,000,000	70,000,000

⑦ 이미 손금 산입한 부담금 등(⑪)	⑧ 손금산입한도액 (⑥-⑦)	⑨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⑩)	⑩ 손금산입범위 액 (⑧과 ⑨ 중 작은 금액)	⑪ 회사손금계상액	⑫ 조정금액 (⑩-⑪)
45,000,000	25,000,000	35,000,000	25,000,000	35,000,000	△10,000,000

2.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⑬ 퇴직연금 예치금등 계(⑭)	⑭ 기초퇴직연금 충당금등 및 전기말신고조정 에 의한 손금산입액	⑮ 퇴직연금충당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	⑯ 기중퇴직연금등 수령 및 해약액	⑰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등 (⑭-⑮-⑯)	⑱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⑬-⑰)
80,000,000	60,000,000		15,000,000	45,000,000	35,000,000

나.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⑲ 기초퇴직연금예치금 등	⑳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㉑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납입액	㉒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⑲-⑳+㉑)
70,000,000	15,000,000	25,000,000	80,000,000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7.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사업연도 : 2025. 1. 1~12. 31(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임))

① 사업연도 : 2025. 1. 1~12. 31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임)

② 매출채권 등 내역

·받을 어음 : 41,000,000(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 포함)

·외상매출금 : 154,000,000(부가가치세 14,000,000 포함)

계 : 195,000,000

③ 대손충당금 계정내역

·장부상 기초충당금 2,300,000(전기부인액 300,000포함)

·다라(주) 당기 대손금상계액(12/31) : 400,000(미확정 대손금 100,000포함)

·당기 손금계상액 50,000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잔액 1,900,000원을 당기 손금산입할 금액에 충당하고 잔액만 손금계상함)

④ 대손실적율 : 0.9%

□세무조정계산

① 매출채권 등 총액계산

·받을 어음 21,000,000원(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원 제외)

·외상매출금 154,100,000원(당기대손금상계액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을 포함)

계 175,100,000원

② 한도액 계산=1,751,000원(175,100,000원×1/100)

■ 설정율 : 1%(일반법인)와 대손실적율 0.9% 중 큰 비율임

③ 환입 또는 보충할 금액 계산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2,300,000원

·충당금 부인 누계액(-) : 300,000원

·당기대손금 상계액(-) : 400,000원

계 : 1,600,000원

④ 과다환입 또는 보충액 계산

·보충액 : 1,900,000원

·보충할 금액 : 1,600,000원

계 : 300,000원..... 과다보충액 발생

⑤ 조정내용 정리

·당기대손금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 손금불산입

• 한도초과액 199,000원 손금불산입

* 회사 설정액(1,900,000 + 50,000)-세무상 한도액(1,751,000)

• 과다보충액 300,000원 손금산입

* 회사 보충액(1,900,000)-세무상 보충할 금액(1,600,000)

[별지 제34호 서식]

사 업 연 도	2025. 1. 1. ~ 2025. 12. 3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안 건
			사업자등록번호

1. 대손충당금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①채권잔액 (②의 금액)	②설정률			③ 한도액 (①×②)	회사계상액			⑦한도초과액 (⑥-③)
		(ㄱ) 1(2) 100 (✓)	(ㄴ) 실적률 ()	(ㄷ) 적립 기준 ()		④당기계상 액	⑤보충액	⑥계	
	175,100,000				1,751,000	50,000	1,900,000	1,950,000	199,000
익 금 산입액 조 정	⑧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⑨기중 충당금 환입액	⑩충당금 부 인 누계액	⑪당기대손금 상 계 액 (②⑦의 금액)	⑫당기 설정충당금 보 충 액	⑬환입할 금 액 (⑧-⑨-⑩- ⑪-⑫)	⑭회사 환입액	⑮과소환입· 과다환입(△) (⑬-⑭)	
	2,300,000		300,000	400,000	1,900,000	△300,000		△300,000	
채 권 잔 액	⑯계정과목	⑰채권잔액의 장부가액		⑱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 계	⑲합계 (⑰+⑱)	⑳충당금 설정제외 채 권	㉑채권잔액 (⑰-⑳)	비 고	
	받을 어음	41,000,000			41,000,000	20,000,000	21,000,000		
	외상매출금	154,000,000		100,000	154,100,000		154,100,000		
	계	195,000,000		100,000	195,100,000	20,000,000	175,100,000		

2. 대손금조정

㉒ 일자	㉓ 계정 과목	㉔ 채권 내역	㉕ 대손 사유	㉖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 고
					㉗ 계	㉘ 시인액	㉙ 부인액	㉚ 계	㉛ 시인액	㉜ 부인액	
12.31	외상매출금	안건(주)	시효소멸	400,000	400,000	300,000	100,000				시효 미완성 100,000
	계			400,000	400,000	300,000	100,000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㉝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익금에 산입할 금액			㉞차액 Max (0,㉝-㉞) (0,㉝-㉞)	㉟상계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㉝-㉞)	비 고
	㉟「법인세법」 제34조제 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하여야 할 금액 Min(㉝,㉞)	㊱「법인세법」 제34조제 4항에 따라 익금에 산 입하여야 할 금액 Mas[0, (㉝-㉞-㊱)]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8.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구 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법§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법§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법§38)
대상 법인	다음의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 받는 내국법인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전기사업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철도공사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환경정책기본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전기·도시가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 수도사업	모든 법인
손금 산입 요건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 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 에 지출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 받아 사업시설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하거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이 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유형자산의 멸실손괴 로 지급받은 보험금 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손금 산입 범위액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소요된 보험차익 전 액
사용 시 익금 산입	㉠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다음의 금액과 상계 $\text{일시상각충당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 \text{손금에 산입되는 감가상각비} \times \frac{\text{일시상각충당금}}{\text{자산의 취득가액}}$ ㉡ 사업용 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계 후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산입		
미 사용시 익금 산입	㉠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 사용 전 폐업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단,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 제외)		
기타	•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가능 •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 2008.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국고보조금을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함(공사부담금은 2006.1.1.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 2011.1.1.이후 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는 먼저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적용 가능
단,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

9.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종 류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범위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74)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운영 법인 ◦ 지방문화원·예술의전당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가맹단체로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고시하는 체육단체 ◦ 공익법인으로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등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전액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법인은 당해 사업과 당해 시설 안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한함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 * 인구 30만명 이하이고 국립 대학교 병원·사립 대학교 운영병원이 없는 지역(조특칙 별표8의6)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100/100
(다)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 (\$104의12) * 2010. 1. 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신용회복목적회사	◦ 해당 사업연도 손실보전준비금 손금 계상액

10.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지급이자 총액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비 고
20%	5,000,000*	9,125,000,000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임(원천징수세액 1,375,000원 포함)
13%	7,800,000	21,900,000,000	
10%	15,000,000	54,750,000,000	
계	27,800,000	85,775,000,000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 2025. 4. 20 가지급 7,000,000
 -2025. 8. 15 가지급금 회수 5,000,000

③ 토지계정 : 임대용 나대지 20,000,000(취득가액, 해당기간 : 2025. 1. 1~2025. 12. 31)

④ 사업연도 : 2025. 1. 1~2025. 12. 31

세무조정 계산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3,625,000원(상여)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 1,375,000(기타사외유출)

②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22,800,000 \times (7,300,000,000 + 1,097,000,000) / (76,650,000,000) = 2,497,737$$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2,497,737(기타사외유출)

[별지 제26호 서식(갑)]

(앞쪽)

사 업 연 도	2025. 1. 1 ~ 2025. 12. 3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주) 안 건
			사업자등록번호	

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①지급이자	적수				⑥차입금 (=⑩)	⑦ ⑤와 ⑥중 적은 금액	⑧손금불산입 지급이자 (①×⑦÷⑥)
	②업무무관 부동산	③업무무관 동산	④가지 금금 등	⑤계 (②+③+④)			
22,800,000	7,300,000,000		1,097,000,000	8,397,000,000	76,650,000,000	8,397,000,000	2,497,737

2.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⑨ 이자 율	⑩지급 이자	⑪차입금 적수	⑫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등		⑮건설자금이자 등		차 감	
			⑬지급 이자	⑭차입금 적수	⑯지급 이자	⑰차입금 적수	⑱지급이자 (⑩-⑬-⑯)	⑲차입금적수 (⑪-⑭-⑰)
20%	5,000,000	9,125,000,000	5,000,000	9,125,000,000			0	0
13%	7,800,000	21,900,000,000					7,800,000	21,900,000,000
10%	15,000,000	54,750,000,000					15,000,000	54,750,000,000
합계	27,800,000	85,775,000,000	5,000,000	9,125,000,000			22,800,000	76,650,000,000

[별지 제26호 서식(을)]

(앞쪽)

사 업 연 도	2025. 1. 1 ~ 2025. 12. 3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주) 안건
	사업자등록번호			

		①연월일	②적요	③차변	④대변	⑤잔액	⑥일수	⑦적수
1. 업무무관부동산의 적수		2025. 1. 1	전기이월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계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2. 업무무관동산의 적수								
		계						
3. 가 지 급 금 등 의 적 수	⑧ 가지급금 등의 적수	2025. 4. 20	가지급	7,000,000		7,000,000	117	819,000,000
		2025. 8. 15	회수		5,000,000	2,000,000	139	278,000,000
		계		7,000,000	5,000,000	-	256	1,097,000,000
	⑨ 가수금 등의적수							
		계						
4. 그 밖의 적수								
		계						
5. 자기자본 적수계산								
⑩대차대조표 자산총계		⑪대차대조표 부채총계		⑫자기자본 (⑩-⑪)		⑬사업연도 일수		⑭적 수

11.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법령§33)

◦법인은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다음의 서류를 법인
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 감가상각시부인 명세서
-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취득자산·취득일·취득가액 내역〉

◦일반자산(내용연수 4년 선택)

-P·C 등(2025. 1. 1 취득) : 6,000,000

-화물차(2025. 8. 1 취득) : 4,500,000

-상각율(내용연수 4년) : 0.528

◦건 축 물

-일반건축물(내용연수 40년 선택, 2025. 2. 25 취득) : 31,000,000

-공장건축물(내용연수 20년 선택)

·공장 등(2025. 1. 27 취득) : 17,200,000

·창고 등(2025. 7. 25 취득) : 8,000,000

◦업종별 자산

-업종(18 : 인쇄업) : 내용연수 5년 선택

·기계장치(2025. 1. 27 취득) : 17,200,000

·기계장치(2025. 7. 2 취득) : 10,000,000

·상각율(내용연수 5년) : 0.45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4)] <개정 2019.3.20>

사 업 연 도	2025. 1. 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법인명	(주) 안 건
	2025. 12. 31.		사업자등록번호	

①자산구분		코드	② 합계액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⑥ 무형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③ 건축물	④ 기계장치	⑤ 기타자산	
재무 상태표 상가액	⑩기말현재액	01	93,900,000	56,200,000	27,200,000	10,500,000	
	⑩감가상각누계액	02	16,316,000	1,810,000	10,150,000	4,356,000	
	⑩미상각잔액	03	77,584,000	54,390,000	17,050,000	6,144,000	
⑩상각범위액		04	15,940,616	1,770,416	10,012,200	4,158,000	
⑩회사손금계상액		05	16,316,000	1,810,000	10,150,000	4,356,000	
조정 금액	⑩상각부인액 (⑩5-⑩4)	06	750,584	189,584	195,000	366,000	
	⑩시인부족액 (⑩4-⑩5)	07	375,200	150,000	57,200	168,000	
	⑩기왕부인액 중 당 기손금추인액	08					
⑩신고조정손금계상액		09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0호 서식(1)]

사업 연 도		2025. 1. 1 ~ 2025. 12. 3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법 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자 산 구 분	① 종 류 또 는 업 종 별			총 계	비품	차량	제조업	제조업
	② 구 조 (용 도) 또 는 자 산 별				p.c	화물차	인쇄업	인쇄업
	③ 취 득 일				2025. 1. 1	2025. 8. 1	2025. 1. 27	2025. 7. 2
④ 내 용 연 수 (신 고·기 준)					4	4	5	5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재 무 상 태 표 자 산 가 액	⑤ 기 말 현 재 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⑥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⑦ 미 상 각 잔 액(⑤-⑥)		23,194,000	3,000,000	3,144,000	9,500,000	7,550,000
	⑧ 회 사 계 산 감 가 상 각 비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⑨ 자 본 적 지 출 액							
	⑩ 전 기 말 의 제 상 각 누 계 액							
	⑪ 전 기 말 부 인 누 계							
⑫ 가 감 계(⑦+⑧+⑨-⑩+⑪)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⑬ 일 반 상 각 륜 · 특 별 상 각 륜					0.528	0.528	0.451	0.451
상 각 범 위 액 계 산	당 기 산 출 상 각 액	⑭ 일 반 상 각 액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⑮ 특 별 상 각 액						
		⑯ 계 (⑭+⑮)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취 득 가 액	⑰ 전 기 말 현 재 취 득 가 액						
		⑱ 당 기 회 사 계 산 증 가 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⑲ 당 기 자 본 적 지 출 액						
	⑳ 계 (⑰+⑱+⑲)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㉑ 잔 존 가 액 (㉒×,)		1,885,000	300,000	225,000	860,000	500,000	
㉒ 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⑯, 단 (⑫-⑯)≤㉑인 경우 ㉑]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㉓ 회 사 계 산 상 각 액 (⑧+⑨)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㉔ 차 감 액 (㉓-㉒)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㉕ 최 저 한 세 적 용 에 따 른 특 별 상 각 부 인 액								
조정액	㉖ 상 각 부 인 액 (㉔+㉕)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㉗ 기 왕 부 인 액 중 당 기 손 금 추 인 액 (㉑, 단, ㉑≤ △㉔)							
㉘ 당 기 말 부 인 누 계 액 (㉑+㉖-㉗)				561,000		366,000	0	195,000
㉙ 당 기 말 의 제 상 각 액 (△ ㉔ - ㉗)								
㉚ 의 제 상 각 누 계 (㉑ + ㉙)								
신고조정감가 상각비계산 (2013.12.31. 이전취득분)	㉛ 기 준 상 각 륜							
	㉜ 종 전 상 각 비							
	㉝ 종전감가상각비한도 [㉛- { ㉜-(㉛- ㉛) }]							
	㉞ 추 가 손 금 산 입 대 상 액							
㉟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 손금산입액								
신고조정감가 상각비계산 (2013.1.1. 이후취득분)	㊱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하는기준내용연수							
	㊲ 기 준 감 가 상 각 비 한 도							
	㊳ 추 가 손 금 산 입 액							
㊴ 추 가 손 금 산 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㉘- ㊳- ㊴)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 <개정 2012.2.28>

(앞 쪽)

사업 연도	2025. 1. 1. ~ 2025. 12. 31.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안건
자산 구분	① 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② 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③ 취득일			2025. 2. 25	2025. 1. 27
④ 내용연수(기준·신고)				40	20
상각 계산 기초 가액	재무상태표	⑤ 기말현재액	56,200,000	31,000,000	17,200,000
	자산가액	⑥ 감가상각누계액	1,810,000	800,000	960,000
		⑦ 미상각잔액(⑤-⑥)	54,390,000	30,200,000	16,240,000
	회계자산	⑧ 전기말누계			
	상각비	⑨ 당기상각비	1,810,000	800,000	960,000
		⑩ 당기말누계(⑧+⑨)	1,810,000	800,000	960,000
	자본적	⑪ 전기말부인누계			
	지출액	⑫ 당기지출액			
		⑬ 합계(⑪+⑫)			
	⑭ 취득가액(⑦+⑩+⑬)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⑮ 일반상각률·특별상각률			0.025	0.050	0.050
상각 범위 액 계산	당기산출	⑯ 일반상각액	1,770,416	710,416	860,000
	상각액	⑰ 특별상각액			
		⑱ 계(⑯+⑰)	1,770,416	710,416	860,000
	⑲ 당기상각시인범위액 { ⑱, 단 ⑱ ≤ ⑭ - ⑧ - ⑪ + ⑮ - 전기 ⑳ }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⑳ 회계상상각액(⑨+⑫)		1,810,000	800,000	960,000	50,000
㉑ 차감액(㉑-㉒)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㉒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조정액	㉓ 상각부인액(㉑+㉒)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㉔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 (㉕, 단 ㉕ ≤ △㉑)				
부인액누계	㉕ 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 ㉖)	0	0	0	0
	㉖ 당기말부인액누계(㉕+㉓- ㉔)	189,584	89,584	100,000	0
당기말의 제상각액	㉗ 당기의제상각액(△㉑ - ㉔)				
	㉘ 의제상각의누계(전기 ㉙+㉗)				
신고조정감가 상각비계산 (2013.12.31 이전 취득분)	㉙ 기준상각률				
	㉚ 종전상각비				
	㉛ 종전감가상각비 한도[㉚-(㉖-㉕)]				
	㉜ 추가손금산입대상액				
신고조정감가 상각비계산 (2014.1.1 이 후 취득분)	㉝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㉞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㉟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㊱ 추가 손금산입 후	㊲ 추가손금산입액				
	㊳ 추가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누계 (㉖-㉟-㊲)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2.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 특례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을 허용하였습니다.(선택사항)

① 신고조정 요건 및 대상자산

- 적용요건 :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
-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
 -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유형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즉시상각의제에 해당되는 자산은 신고조정할수 없다 (법인세과-222, 2012. 3. 28.).

② 신고조정 적용방법

- 결산서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 한도까지 손금산입 가능

③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 2013.12.31. 이전 취득 자산(아래의 '동종자산'을 말함)
 - 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감가상각비(이하 “종전감가상각비”라 함)가 법인세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법법§23②(1))
 - (손금산입한도) 다음의 ㉠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23②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법령§26의2②)

㉠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기준상각률
 - * 기준상각률 계산 :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합계액 ÷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의 평균비율(법령 § 26의2④(1))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미상각잔액 × 기준상각률
 - * 기준상각률 :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액 합계액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의 평균비율(법령 § 26의2④(2))

**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하고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법령 § 26⑥단서 준용)

㉡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기준상각률)-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의 정액법과 같이 적용

·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23①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기준상각률은 ㉠의 정률법과 같이 적용

○ 2014.1.1. 이후 취득 자산(법법§23②(2), 법령§26의3①)

-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23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법법§23②(2))

- (손금산입한도) 기준감가상각비 적용대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23②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에 따른 금액과 ㉢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법령§26의3②)

13.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기부금계정의 금액은 104,500,0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법정기부금 : 2025. 4. 1. 지출한 이재민구호금품 5,000,000원

2025. 8. 1. 지출한 사립대학 시설비 10,000,000원

2025. 9. 1. 지출한 국립대학병원 연구비 40,000,000원

㉡ 일반기부금 : 48,000,000원 [2025. 1. 31 만기 지급어음 5,000,000원 포함]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1,500,000원

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78,500,000원

③ 세무조정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41,500,000원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 포함됨.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39,000,000원

④ 「법인세법」 §13, 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 : 135,000,000원

⑤ 사업연도는 2025. 1. 1~2025. 12. 31이며 일반 영리법인임.

□ 세무조정 계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계산>

① 50%한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279,000,000 (178,500,000 + 41,500,000 - 39,000,000)
+ (5,000,000 + 10,000,000 + 40,000,000 + 43,000,000*)

* 어음으로 지급한 5,000,000원은 2025년 기부금이므로 손금부인

㉒ 손금산입한도액 : 72,000,000 = (279,000,000 - 135,000,000) × 50%

㉓ 한도초과액 : △17,000,000(한도미달) = 55,000,000 - 72,000,000

② 10%한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㉔ 손금산입한도액 : 8,900,000 = (279,000,000 - 135,000,000 - 55,000,000) × 10%

㉕ 한도초과액 : 34,100,000(한도초과) = 43,000,000 - 8,900,000

사업연도	2025. 1. 1. ~ 2025.12.31.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안건 101-81-12345
------	---------------------------------	-----------	------------------	-----------------------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279,000,000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㉓]	55,000,000
②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135,000,000	⑥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0, ③]	
③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55,000,000	⑦ 한도초과액[(③-⑥)>0]	89,000,000
④ 한도액 {[①-(②)>0]×50%}	72,000,00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자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금액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⑩ 한도액 (①-②)×30%	26,700,000	⑫ 한도초과액[(⑨-⑩)>0]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⑬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43,000,000	⑮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⑬-⑭)>0, ⑬]	8,900,000
⑭ 한도액(⑧×10%, 20%)	8,900,000	⑰ 한도초과액[(⑬-⑮)>0]	34,100,000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⑮, ㉓)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⑮ 기부금 합계액(③+⑨+⑬)	98,000,000	⑲ 손금산입 합계(⑥+⑪+⑮)	63,900,000	⑳ 한도초과액 합계(⑮-⑲)=(⑦+⑫+⑰)	34,100,000
------------------	------------	------------------	------------	-------------------------	------------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㉑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㉒기 공 제 액	㉓공제가능 잔액(㉑-㉒)	㉔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㉕차기이월액 (㉑-㉔)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34,100,000		34,100,000		34,100,0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34,100,000		34,100,000		34,100,00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㉖지출액 합계금액	㉗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액	㉘차기 이월액 (㉖-㉗)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55,000,000	55,000,000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43,000,000	8,900,000	34,100,000

14.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다음은 2025. 1. 1.~2025. 12. 31.의 (주)가나의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 자료임.

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도매 : 섬유)

㉡ 매출액 : 제조·도매 : 500억(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00억 포함)

수 출 : 300억

잡수익 중 매출액 해당액 : 10억

②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일반관리비 중 기업업무추진비 : 1억5천만원

┌ 1회 3만원 초과 지출분 : 1억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92백만원*)

└ 1회 3만원 이하 지출분 : 5천만원(신용카드 등 사용분 40백만원)

* 법인신용카드 사용분에는 2025년 8월 중 지출한 문화기업업무추진비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광고선전비 및 회의비 중 기업업무추진비 : 22백만원

(전액 1회 3만원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사용분 : 2천만원)

㉢ 건설가계정(건물)중 기업업무추진비 : 57백만원

┌ 1회 3만원 초과 지출분 : 43백만원(전액 신용카드 사용)

└ 1회 3만원 이하 지출분 : 14백만원(신용카드사용분 12백만원)

⇒ 당해연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 취득가액 : 40억원

└ 감가상각비 계상액 : 4천만원

□ 세무조정 계산

① 세무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

$$219,000,000 = (150,000,000 - 8,000,000^*) + (22,000,000 - 2,000,000^*) + 57,000,000$$

* 8,000,000 및 2,000,000은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직부인된 금액임

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 162,600,000원(152,600,000원+10,000,000원)

㉠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152,600,000원 (36,000,000 + (i) + (ii))

(i) 일반수입금액 기준

$$110,000,000 + (71,000,000,000 - 50,000,000,000) \times 3/10,000$$

$$= 116,300,000$$

(ii)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 기준

$$\bullet \{ 110,000,000 + (81,000,000,000 - 50,000,000,000) \times 3/10,000 \} - (i)$$

$$\times 10\% = 300,000$$

㉔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 10,000,000원

- $\text{Min}[10,000,000, (152,600,000 \times 20\%)]$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219,000,000 - 162,600,000 = 56,400,000$

③ 세무조정

◦ 3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0,0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귀속자(불분명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 1회 3만원초과 지출분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일반관리비 8,000,000, 광고선전비 2,000,000)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56,4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한도초과액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한 금액($142,000,000\text{원} + 20,000,000\text{원}$)에 미달하므로 건물의 가액을 감액할 금액은 없음

[사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계정에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방법

※ 위 사례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한도 초과액이 17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 162,000,000원을 10,000,000원 초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

〈세무 조정〉

◦ 10,000,000원은 자산계정인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순으로 자산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함.

◦ 건물의 당해 사업연도 상각비중 자산감액처리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함.

⇒ 당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부인에 따른 자산감액처리시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과 상계됨.

$\text{상각비} \times \frac{\text{자산감액처리잔액}}{\text{건물(감가상각전 장부가액)}} = \text{손금불산입액}$

- 건물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 계산

(당해 연도) $40,000,000 \times 10,000,000 / 4,000,000,000 =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2차 연도) $40,000,000 \times 9,900,000 / 3,960,000,000 =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3차 연도 이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별지 제23호서식(갑)] <2024. 3. 22 개정>

(앞 쪽)

사업연도	2025. 1. 1. ~ 2025. 12. 31.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주)안건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구 분					금 액
①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229,000,000
②기준금액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10,000,000
③차감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①-②)					219,000,000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④ $\frac{1,200\text{만원}}{(\text{중소기업 } 3,600\text{만원})} \times \frac{\text{해당 사업연도 월수}(12)}{12}$				36,000,000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30,00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20/10,000			80,00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9,300,000
		⑤소계			119,300,000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30/10,000			30,00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80,00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6,300,000
		⑥소계			116,300,000
	⑦수입금액 기준		(⑤-⑥)×10/100		300,000
⑧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④+⑥+⑦)				152,600,000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⑨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10,000,000
	⑩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⑨과 (⑧×20/100) 중 작은 금액)				10,000,000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136조 제6항)	⑪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5,000,000
	⑫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⑪과 (⑧×1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5,000,000
⑪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⑧+⑩+⑫)					167,600,000
⑫한도초과액(③-⑬)					51,400,000
⑬손금산입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지출액(③과 ⑬ 중 작은 금액)					167,600,000

[별지 제23호서식(을)] <2023. 3. 20 개정>

사업연도	2025. 1. 1 ~ 2025. 12. 31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을)		법인명	(주)안건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수입금액명세						
구 분		①일반수입금액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③합 계 (① + ②)		
금 액		71,000,000,000	10,000,000,000	81,000,000,000		
2.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④계 정 과 목		일반관리비중 접 대 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등	건설가계정 (건물)	합 계	
⑤계 정 금 액		150,000,000	22,000,000	57,000,000	229,000,000	
⑥기업업무추진비계상액 중 사적 사용경비						
⑦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⑤ - ⑥)		150,000,000	22,000,000	57,000,000	229,000,000	
⑧신 용 카 드 등 미 사 용 금 액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⑨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총 초과금액				
	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⑪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총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⑬송금명세서 미제출금액				
		⑭총 지출액				
	기업업무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⑮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8,000,000	2,000,000	0	10,000,000
		⑯총 초과금액	100,000,000	22,000,000	43,000,000	165,000,000
⑰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⑨ + ⑪ + ⑬ + ⑮)		8,000,000	2,000,000	0	10,000,000	
⑱접 대 비 부 인 액 (⑥ + ⑰)		8,000,000	2,000,000	0	10,000,000	

1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조정 사례

㉑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A법인*(12월말 법인)이 '25.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5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법령 § 42②)에 해당하지 않음

- '25년 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용사용비율 70%, 대표자 사적 사용분 30%로 확인된 경우

-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 하였으나 총 차량관련 비용은

60,000,000원임.

* $200,000,000\text{원} \div 5\text{년} = 40,000,000\text{원}$

- (세무조정)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감가상각비 8백만원 한도)

- 차량유지 비용 세무조정
 - 차량 관련 유지비 사적 사용액 6,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 차량유지비용(20,000,000원) × 사적사용(30%) = 6,000,000원
-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미계상 세무조정 :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 $200,000,000\text{원} \div 5\text{년} = 40,000,000\text{원}$
 -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12,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 감가상각비(40,000,000원) × 사적사용(30%) = 12,000,000원
 -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 (감가상각비(40,000,000) × 70%) - MIN[(40,000,000원 × 70%), 상각한도(8,000,000)]
 - ** 한도 초과분은 누적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까지 이월 공제

㉔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 B법인(12월말 법인)이 '25.1.10. 2천만원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5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500,000원, 유류비 2,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감가상각비 4,000,000*원 계상하여 총 차량관련 비용은 7,000,000원임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 § 42②)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 $20,000,000\text{원} \div 5\text{년} = 4,000,000\text{원}$
- (세무조정) 회사가 계상한 차량관련 유지비용 7,000,000원*은 총 인정비용 1천5백만원(감가상각비 한도 8백만원) 한도내이므로 세무조정 없이 전액 인정
 - * $500,000\text{원} + 2,000,000\text{원} + 500,000\text{원} + 4,000,000\text{원} = 7,000,000\text{원}$

㉕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C법인*(12월말 법인)이 '25.1.10.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5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연도 차량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법령 § 39③)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 $200,000,000\text{원} \div 5\text{년} = 40,000,000\text{원}$
- (세무조정)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인정하므로 차량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용을 안분계산하여 초과분 세무조정

- 차량유지비 세무조정
 - 간주업무사용비율 : 25%*
 - * 1천만원 초과비용(15,000,000) / 총비용(60,000,000)
 - 차량관련 유지비 손금 부인액 15,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 총 유지비(20,000,000)-[총 유지비(20,000,000)×간주업무사용비율(25%)]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4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차량 감가상각비 사적 사용액 30,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 감가상각비(40,000,000원)-[감가상각비(40,000,000)×간주업무사용비율(25%)]
-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 【감가상각비 (40,000,000)×25%】 -Min 【(40,000,000원×25%), 상각한도(8,000,000)】
 - ** 한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미달 시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16. 조정한목별 소득처분 사례

조정한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수입금액	•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 가산 • 동 매출원가	익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 전기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 동 매출원가			익금불산입	유 보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결산 수입계상	손금불산입	유 보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결산 수입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기업업무 추진비	• 한도초과액 •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 한도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 당기미지급기부금 •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당기 한도액계산시 포함)	〃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 당기가지급 계상분 (한도액계산시 포함)			손금산입	유 보
	•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비용처리	손금불산입	유 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 직원(임원 포함) •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전 각호 이외의 개인	익금산입 〃 〃 〃	배 당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소득세 대납액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특수관계 소멸시 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	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 이 자	◦건설중인 자산분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 자산분	손금불산입 "	유 보 "		
	◦전기부인 유보분중 당기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채권자가 불분 명한 사채이자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대표자) 기타사외유출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비업무용 부동산등 지급이자	◦비업무용 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각 종 준비금	◦범위초과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전기범위초과액중 환입액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유 보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유 보 " 유 보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익금산입	유 보		
퇴직급여 충 당 금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지급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 보 "
퇴 직 보험료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대손충당금	◦범위초과액 ◦전기범위초과액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재고자산	◦당기평가감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당기평가증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 보 유 보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 보 유 보
국 고 보조금등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 등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 타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감 가 상 각 비	◦당기부인액 ◦기왕부인액중 당기 용인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기 타	◦법인세 등 ◦벌과금, 과료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손금불산입 " "	기타사외유출 " 상 여	익금불산입	기 타
	◦영 §88①8호·§8호의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 세가 과세되는 금액 ◦잉여금증가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익금산입	기 타	손금산입	기 타

17.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수 입 배 당 금	3,000,000	수입계상 누락분
재 고 자 산 평 가 감	770,000	재고자산 과소평가액
퇴 직 급 여 총 당 금	840,000	한도초과액
대 손 총 당 금	134,000	한도초과액
연구 및 인 력 개 발 준 비 금	560,000	한도초과액
인 정 이 자	130,000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 금 공 과	654,000	토지매입에 다른 취득세
잡 비	75,000	별과금
건 설 자 금 이 자	2,340,000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토지)
법 인 세 등	2,000,000	중간예납 등

②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재 고 자 산 평 가 감	380,000	전기 손금불산입 유보분중 당기사용분
감 가 상 각 비	1,340,000	전기부인누계액중 당기용인액
수 입 이 자	22,000	국세환급금 이자

[별지 제15호 서식]

사 업 연 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 인 명
2025. 1. 1 ~ 2025. 12. 31		(주) 안 건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81-12345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 목	②금 액			③소득처분		④과 목	⑤금 액			⑥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수 입 배 당 금	3	000	000	유보	4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380	000	유보	1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770	000	"	400	감 가 상 각 비	1	340	000	"	100
퇴 직 급 여 총 당 금		840	000	"	400	수 입 이 자		22	000	기타	200
대 손 총 당 금		134	000	"	4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560	000	"	400						
가지급금인정이자		130	000	상여	100						
세 금 공 과		654	000	유보	400						
잡 비		75	000	기타 사외유출	500						
건 설 자 금 이 자	2	340	000	유보	400						
법 인 세 등	2	000	000	기타 사외유출	500						
합 계	10	503	000			합 계	1	742	000		

18. 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

- A법인 :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조특법 §64)
- 입주일 : 2022. 5. 1
- 감면비율 : 50%
- 사업연도 : 2025. 1. 1~12. 31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250,000,000원
 - [과세사업 관련 소득 : 30,000,000원]
 - [감면사업 관련 소득 : 220,000,000원]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5,000,000원(전액 과세사업 관련 소득임)
- 차감소득 : 255,000,000원
 - [과세사업 관련 소득 : 35,000,000원]
 - [감면사업 관련 소득 : 220,000,000원]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1,000,000원(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

□세무조정 계산

- 다음의 1과 2중 많은 금액 17,850,000원에서 최저한세적용 배제대상 세액공제액 1,000,000원을 차감한 16,8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각종 감면 후 세액 ⇨ 16,177,451원

·과세표준 : 255,000,000원

·산출세액 : 255,000,000×세율

·감면세액 : 농공단지입주기업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과세표준 × 감면율(50%)

$$13,372,549 = 31,000,000 \times 220,000,000 / 255,000,000 \times 50 / 100$$

·각종 감면후 세액 : 16,177,451원

* 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1,000,000원 미차감 금액임.

2. 최저한세 (감면전 과세표준의 7%) ⇨ 17,850,000원

감면전 과세표준	최저한세율	최저한세
차 가 감 소 득 계 255,000,000	× 7% =	17,850,000원

19.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 다음 자료에 의하여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봅시다.

□ 자 료

·사업연도 : 2025. 1. 1~12. 3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건설자금이자	4,520,000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수입배당액	1,000,000	수입계상누락분(미수금입)
재고자산평가감	770,000	재고자산평가감액임
퇴직급여충당금	840,000	한도초과액임
대손충당금	694,000	한도초과액임
퇴직금	220,000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인정이자	130,000	대표자 가지금금 인정이자
세금공과	654,000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
잡비	75,000	벌과금임
미지급기부금	2,340,000	전기 손금산입 유보분임
법인세 등	2,000,000	손금불산입
합 계	13,243,000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전기대손부인액	380,000	대손부인액중 회수된 상각채권추심이익 계상액
재고자산평가감	4,110,000	전기손금불산입 유보분중 당기사용해당분
감가상각비	1,340,000	전기부인누계액중 당기용인액
수입이자	22,000	국세환급금이자
대손금	2,720,000	소멸시효완성된 외상매출금
합 계	8,572,000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생략

《기타 내역》

① 법인세 공제후 당기순이익	200,000,000원	⑥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90,000원
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5,000,000원	⑦ 중간예납법인세	15,000,000원
③ 이월결손금(5년 미경과)	2,000,000원	⑧ 원천납부법인세	3,000,000원
④ 비과세 및 소득공제	없 음	⑨ 조정후 수입금액	3,000,000,000원
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0,000원		

□조정계산 내역

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당해연도 해당사항 없음.

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계산

- 과세표준 207,671,000

- 산출세액 : $200,000,000 \times 9\% + 7,671,000 \times 19\% = 19,457,490$

- 공제감면세액⑦에 해당하는 ⑤항을 동서식(121)에 기재

사업 연도	2025. 1. 1. ~ 2025.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 인 명	(주) 가나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②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③법 인 명	(주) 안건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홍길동		⑥전 자 우 편 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제조	⑨종 목	기초화학물	⑩주 업 종 코드	241102
⑪사 업 연 도	2025. 1. 1. ~ 2025. 12. 31.		⑫수 시 부 과 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①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①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일반 중견기업 상·하출자 제한기업 그 외 기업 당초야매				⑯외 부 감 사 대 상	①.여 2. 부	
영 리 법 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⑰신 고 구 분	①.정기신고	
	코 스 닥 상 장 법 인	21	72	82	92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기 타 법 인	30	73	83	93		3. 기한후 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4. 중도폐업신고	
⑱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⑲결 산 확 정 일		
⑳신 고 일						㉑납 부 일		
㉒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㉓주 식 변 동	1	②	㉔장 부 전 산 하	①	2
㉕사 업 연 도 의 제	1	②	㉖결 산 금 소 급 공 제 법 인 세 환 금 신 청	1	②
㉗감 가 상 각 방 법 (내 용 연 수) 신 고 서 제 출	1	②	㉘재 고 자 산 등 평 가 방 법 신 고 서 제 출	①	2
㉙기 능 통 화 채 택 재 무 제 표 작 성	1	②	㉚과 세 표 준 환 산 시 적 용 환 율		
㉛동 업 기 업 의 출 자 (동 업 자)	1	②	㉜국 제 회 계 기 준 (K-IFRS) 적 용	1	②
㉝기 능 통 화 도 입 기 업 의 과 세 표 준 계 산 방 법	1	②	㉞미 환 류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신 고	1	②
㉟성 실 신 고 확 인 서 제 출	1	②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㉓수 입 금 액	(3,000,000,000)			
㉔과 세 표 준	207,671,000			
㉕산 출 세 액	19,457,490			19,457,490
㉖총 부 담 세 액	19,457,490			19,457,490
㉗기 납 부 세 액	18,000,000			18,000,000
㉘차 감 납 부 할 세 액	1,457,490			1,457,490
㉙분 납 할 세 액				
㉚차 감 납 부 세 액				
㉛조 정 반 번 호				
㉜조 정 자 관 리 번 호	㉝조정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㉞예 입 처	은행 (본)지점	
	㉟예 금 종 류		
	㊱계 좌 번 호	예금	

신고인은「법인세법」제60조 및「국세기본법」제45조, 제45조의 2, 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월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안세회계법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서 료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1주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 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 없음
------------------	---	-----------

사업연도	2025. 1. 1. ~ 2025.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①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⑩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200 000 000	
	소 득 조 정 액	⑫ 익 금 산 입	02	13 243 000
		⑬ 손 금 산 입	03	8 572 000
	⑭ 차 가 감 소 득 금 액 (⑩ + ⑫ - ⑬)	04	204 671 000	
	⑮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5 000 000	
	⑯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	54		
	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⑭ + ⑮ - ⑯)	06	209 671 000	

② 과세표준 계산	⑱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⑰=⑯)		209 671 000
	⑲ 이월결손금	07	2 000 000
	⑳ 비과세소득	08	
	㉑ 소득공제	09	
	㉒ 과세표준 (⑱-⑲-⑳-㉑)	10	207 671 000
	㉓ 선박표준이익	55	

③ 산출세액 계산	㉔과세표준(㉑+㉒)	56		207 671 000
	㉕세율	11		19%
	㉖산출세액	12		19 457 490
	㉗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13		
	㉘세율	14		
	㉙산출세액	15		
	㉚합계(㉔+㉕)	16		19 457 490

④ 납부할 세액 계산	⑫ 산출세액(⑫ = ⑬)			19 457 490
	⑭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17	250 000
	⑮ 차감세액		18	19 207 490
	⑯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19	
	⑰ 가산세액		20	90 000
	⑱ 가감계(⑮-⑮+⑰)		21	19 290 490
	기납 부세액	⑲ 중간예납세액	22	15 000 000
		㉀ 수시부과세액	23	
		㉁ 원천납부세액	24	3 000 000
		㉂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 세액	25	
		㉃ 소계 (⑲+㉀+㉁+㉂)	26	18 000 000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 합계(㉄+㉃)		28	18 000 000

㊹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㊺ 차감납부할세액 (㉛-㉝+㉟)	30	1 290 490	

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㉔ 등 기 자 산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59	
	㋌ 세율	60	
	㋍ 산출세액	61	
	㋎ 가산세액	62	
	㋏ 이자상당액	63	
	㋐ 납부할세액 (㋍+㋎+㋏)	64	

⑦ 세액계	⑮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⑬ + ⑮ + ⑯)	46	1 290 490
	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⑬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⑮-⑰-⑱-⑲-⑳+㉑)	47	
	⑮ 분 납 세 납	48	
	⑱ 차감납부세액 (⑮-⑰-⑱)	49	1 290 490

20. 2025. 12. 31일자 법인결산과 세무신고를 위한 국세청 고시 회계·세무환율 (재정환율)

통 화(Currency)			고 시 환 율		비 고
			2025. 12. 31. 현재	2024. 12. 31. 현재	
미 국	달러	USD	1,434.90	1470.00	100엔당
일 본	엔	JPY	917.63	936.48	
유 로	유로	EUR	1,685.72	1528.73	
(독 일)	마르크	DEM	EUR통화	EUR통화	
(프랑스)	프랑	FRF	"	"	
(이탈리아)	리라	ITL	"	"	
(벨기에)	프랑	BEF	"	"	
(오스트리아)	실링	ATS	"	"	
영 국	파운드	GBP	1,932.31	1843.67	
캐 나 다	달러	CAD	1,047.72	1023.96	
스 위 스	프랑	CHF	1,811.97	1626.38	
홍 콩	달러	HKD	184.51	189.30	
스 웨 덴	크로네	SEK	155.97	133.23	
호 주	달러	AUD	961.02	913.68	
덴 마 크	크로네	DKK	225.69	204.98	
싱 가 폴	달러	SGD	1,117.52	1081.08	
중 국	위안	CNH	204.76	201.27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8.56	9.11	100루피아당
태 국	바트	THB	45.62	43.00	
쿠 웨 이 트	디나르	KWD	4,659.52	4770.56	
말레이시아	링기트	MYR	354.56	329.23	
노 르 웨 이	크로네	NOK	142.78	129.62	
뉴 질 랜드	달러	NZD	831.02	828.27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SAR	382.56	391.43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디르함	AED	390.67	400.22	
바 레 인	디나르	BHD	3,806.10	3896.62	

※ 외화자산·부채평가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말함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환율조회')에서 조회 가능

- 기준환율 : 미화의 외국환은행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환율
- 재정환율 : 미화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2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재무상태표

㉠ 2025. 1. 1~12. 31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법인명	(주) 안 건	
사업연도	2025. 1. 1~12. 31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I. 유동자산	01	182,000,000	I. 유동부채	229	113,000,000
II. 비유동자산	80	388,000,000	II. 비유동부채	284	8,000,000
			부채총계(I + II)	333	121,000,000
			III. 자본금	334	100,000,000
			IV. 자본잉여금	337	78,000,000
			V. 자본조정	348	△39,000,000
			VII. 이익잉여금	372	310,000,000
			자본총계 (III + VI+V+VII)	382	449,000,000
자산총계(I + II)	333	570,000,000	부채와 자본총계	383	570,000,000

㉡ 2025. 1. 1~12. 31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법인명	(주) 안 건	
사업연도	2025. 1. 1~12. 31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I. 유동자산	01	188,000,000	I. 유동부채	229	108,000,000
II. 비유동자산	80	552,000,000	II. 비유동부채	284	33,000,000
			부채총계(I + II)	333	141,000,000
			III. 자본금	334	100,000,000
			IV. 자본잉여금	337	78,000,000
			V. 자본조정	348	△64,000,000
			VI. 이익잉여금	372	485,000,000
			자본총계(III + IV)	382	599,000,000
자산총계(I + II)	333	740,000,000	부채와 자본총계	383	740,000,000

② 세무조정결과 소득증가로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은 다음과 같음.

·법인세 500,000원 ·지방소득세 40,000원

③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음.

·'05년 1월~12월 4,000,000원('06~'07년에 3,50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미공제액 500,000원이 남아있음)

④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과 당기 소득금액 조정내역

과목 또는 사항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계산서(을) 전기말금액	당기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 액	처 분	금 액	처 분
공사수입조정	5,000,000	3,500,000	유 보	5,000,000	유 보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		5,000,000	기타사외유출		
외화평가차손	4,000,000	200,000	유 보		
가지금금인정이자		900,000	상 여		
건설자금이자	800,000	100,000	유 보		
중소기업투자준비금한도초과	2,200,000			1,000,000	유 보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300,000	900,000	유 보		
대손충당금한도초과	700,000			700,000	유 보
재고자산평가감	400,000	600,000	유 보	400,000	유 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부인액	3,000,000			2,000,000	유 보
토지취득세	260,000	240,000	유 보		
별과금		270,000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등		3,300,000	기타사외유출		
계	16,660,000	15,010,000		9,100,000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과 목	기초잔액	당기중의 증감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감 소	증 가		
자 본 금	직전기 본표상의 기말잔액	감 자	증 자	기말 B/S상 잔액	재무상태표
자본잉여금	"	당 기 감 소 액	당 기 발 생 액	기말 B/S상 금액	"
이익잉여금	"	"	당 기 발 생 액	"	"
자본조정계정	"	"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 명세서(을)계	"	감 소 총 액	증 가 총 액	기 말 잔 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손금미계상 법인세 등	"	당 기 납 부	당 기 미 계 상 액	좌 동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당초 계상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과목	기초잔액	당기중의 증감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감 소	증 가		
제작	직전기본표상 의 기말잔액	○전기 익금산입분중 익금불산입 유보 ○전기 손금불산입분중 손금 산입 유보 ○전기손금산입(△)분중 손금 불산입유보(△) ○전기 익금불산입(△)분중 익금산입유보(△)	○익금산입 유보(+) ○손금불산입유보(+) ○손금산입유보(△) ○익금불산입유보(△)	기초잔액-당 기감소 + 당 기증가	소득금액 조 정 합 계 표 중 유보처분 금 액

[별지 제50호서식(갑)] <2022.3.18 개정>

사업연도	2025.1.1 ~ 2025.12.3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주)안건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I.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자본금및 적립금 의 계산	1. 자 본 금	01	100,000,000		100,000,000	
	2. 자 본 잉 여 금	02	78,000,000		78,000,000	
	3. 자 본 조 정	15	△39,000,000		△25,000,000	△64,000,00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				
	5. 이 익 잉 여 금	14	310,000,000		175,000,000	485,000,000
	6. 계	20	449,000,000		150,000,000	599,000,000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	21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000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8. 법 인 세	22			500,000	500,000
	9. 주 민 세	23			40,000	40,000
	10. 계 (8+9)	30			540,000	540,000
11. 차 가 감 계(6+7-10)	31	465,660,000	9,100,000	155,000,000	611,560,000	

II.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⑥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발 생 액			⑩ 소급 공제	⑪ 차감계	⑫ 기 공제액	⑬ 당기 공제액	⑭ 보전	⑮ 계	⑯ 기한 내	⑰ 기한 경과	⑱ 계
	⑦계	⑧일반 결손금	⑨배분한도초과 결손금(⑧=⑮)									
'03.12	4,000,000	4,000,000			4,000,000	3,500,000			3,500,000		500,000	500,000
계	4,000,000				4,000,000	3,500,000			3,500,000		500,000	500,000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⑲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⑳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㉑ 손금산입 한 배분한도 초과 결 손 금	㉒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 손 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㉓ 합 계 (㉒=㉑+ ㉕+㉖)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㉔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㉕ 이월결손금 (㉑=㉒) ㉑과㉒ 중 작은것에 상당하는 금액

III.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금액 수정

㉗과목 또는 사항	㉘코드	㉙전기말 잔액	㉚기초금액 수정	㉛계(㉙+㉚)	㉜비 고

[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업 연도	2025. 1. 1. ~ 2025. 12. 3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인명		(주) 안 건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세무조정유보소득계산																
① 과목 또는 사항				② 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 기말잔액 (익기초현재)	비 고								
					③ 감 소	④ 증 가										
공 사 수 입				5,000,000	5,000,000	3,500,000	3,500,000									
외 화 평 가 차 손				4,000,000		200,000	4,200,000									
건 설 자 금 이 자				800,000		100,000	900,000									
중 소 기 업 투 자 준 비 금 한 도 초 과				2,200,000	1,000,000		1,200,000									
퇴 직 급 여 충 당 금 한 도 초 과				300,000		900,000	1,200,000									
대 손 충 당 금 한 도 초 과				700,000	700,000		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400,000	400,000	600,000	600,000									
(유형)감 가 상 각 비 부 인 액				3,000,000	2,000,000		1,000,000									
토 지 취 득 세				260,000		240,000	500,000									
계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000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3월 6일(금)	3월 9일(월)	3월 10일(화)	3월 11일(수)	3월 12일(목)
미 달 러 (USD)	1464.30	1474.50	1493.10	1472.80	1467.30
일 본 엔 (JPY)	929.33	931.61	946.17	931.21	922.86
영 국 파 운 드 (GBP)	1955.28	1963.67	2005.91	1975.69	1964.49
캐 나 다 달 러 (CAD)	1071.18	1084.91	1099.20	1083.18	1078.94
홍 콩 달 러 (HKD)	187.27	188.49	190.92	188.25	187.50
위 안 화 (CNH)	212.70	213.29	215.67	213.94	213.80
유 로 화 (EUR)	1699.54	1700.84	1736.48	1709.48	1694.51
호 주 달 러 (AUD)	1027.72	1029.05	1055.85	1048.04	1046.40
싱 가 폴 달 러 (SGD)	1143.18	1149.80	1171.56	1156.09	1150.42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71.37	373.67	376.76	375.24	374.65